

2. 住宅建設基準등에 관한 規則改正令(案) 立法豫告

建設部公告 第1994-300號 1994.12.13

건설부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4.12.14.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자재 등록업무와 관련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등록대상인 주택자재의 품질검사 횟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과 동시에 검사결과 보고의 서식과 내용을 간소화 하는등 민원관련업무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되었거나 총무처에서 추진중인 서식정비계획에 포함된 규제완화 사항으로서 앞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후 '95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내용

- 시멘트벽돌등 5개 등록품목의 주택자재의 품질검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검사기관(예 : 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에서 정기검사는 년1회이상, 수시검사는 년2회(시멘트가공제품은 년4회)이상 시행토록 되어 있던 것을 수시검사횟수도 년1회이상으로 조정함.
- 시·도지사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주택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년2회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던것을 년1회만 보고토록 하고, 보고내용도 불합격업체 또는 검사불응업체에 대해서만 보고토록 함으로서 일선기관의 업무량을 경감하도록 함.
- 주택자재등록 업무와 관련한 민원처리기간이 생산업등록신고는 10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3일, 재교부신청은 3일로 되어 있던것을 생산업등록은 7일, 기타 업무는 즉시처리로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

주택자재의 품질검사 횟수축소

• 현행(제19조 제1호)

- 주택자재(5개 품목)의 품질검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검사기관(예: 서울시건설자재시험소)에서 정기검사는 년1회, 수시검사는 년2회(시멘트가공제품은 년4회)이상 시행함.

※주택자재의 등록품목

점토소성제품	보통벽돌
시멘트가공제품	시멘트벽돌 속빈시멘트블록
콘크리트제품	콘크리트조립식부재(PC) 경량기포콘크리트 조립식부재(ALC)

• 개정(안)

- 수시검사 횟수를 년2회이상에서 년1회이상으로 함.
(’94.6.28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

• 개정사유

- 그동안 반복된 품질검사를 통하여 주택자재의 품질이 어느정도 향상되었으며
- 빈번한 검사로 인한 업체의 검사비 부담등이 가중되고
- 시료채취 공무원의 잦은 출장으로 지방공무원의 업무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간소화 하고자 함.

주택자재의 품질검사 결과보고 간소화

• 현행(제22조 제5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

- 시·도지사는 주택자재생산업자가 생산하는 주택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를 년2회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개정(안)

- 시·도지사는 주택자재에 대한 품질검사결과를 년1회 보고하여야 함.
※총무처보고사무정비추진계획('94.8.27)에 의함.

• 개정사유

- 지금까지는 주택자재등록업체에 대한 품질검사결과를 합격·불합격에 관계없이 년2회 제출토록 함으로서 보고업무가 과다하였으므로
- 앞으로는 재검사 결과 불합격업체 및 검사불응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만을 보고토록 하고 보고서 제출도 년1회로 축소함으로서 일선기관의 보고업무를 간소화함.

주택자재등록관련 민원처리기간 단축

• 현행 및 개정안(별지 제1호, 제3호, 제5호서식등)

구 분	처 리 기 간		비 고
	현 행	개정(안)	
◦ 주택자재생산업등록신고	10일	7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칙 제13조 제1항(별지 제1호서식)
◦ 주택자재생산업등록 사항변경 신고	3일	즉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별지 제3호 서식)
◦ 주택자재 생산업자 등록증 재교부신청	3일	즉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별지 제5호 서식)

• 개정사유

- 대국민 행정서비스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총무처에서 추진중인 서식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자재 관련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함.